##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이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796 발의연월일: 2020. 11. 2.

발 의 자 : 임이자 · 윤영석 · 태영호

권명호 • 이종성 • 정진석

서일준 · 송언석 · 정점식

추경호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는 환경부장관이 3년마다 국민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.

동 조사결과를 토대로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인식을 개선하는 정책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사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최적의 표본을 설계하고, 조사 응답의 정확성 및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최적의 조사방식 등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.

이를 위해 지역별 가구 현황, 건축물의 종류 및 옥내급수관 현황 등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관련 기관·단체 등에 요청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29조의2제3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관련 기관·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9조의2(수돗물 먹는 실태조사)	제29조의2(수돗물 먹는 실태조사)
①·② (생 략)	①·② (현행과 같음 <u>)</u>
<u>&lt;신 설&gt;</u>	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
	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	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
	지방자치단체의 장, 관련 기관
	•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
	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
	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
	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
	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
	따라야 한다.